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태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46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2.

발 의 자 : 안태준 · 전용기 · 문진석
정준호 · 맹성규 · 염태영
이연희 · 전현희 · 최혁진
소병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붕괴·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등의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대(垓) 외의 지목으로 변경되어 토지 가치가 하락할 우려 및 향후 개발 사업 시행 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 등으로 인하여 철거에 소극적임.

이에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지목을 대(垓)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, 빈집이 철거된 토지가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빈집이 철거되었음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할 유인을 제공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46조

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빈집 소유자(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를 말한다)가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은 그 부속토지의 지목이 대(垔)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목을 대(垔)로 변경할 수 있다.

③ 빈집 소유자(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)가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로서 그 부속토지를 주차장, 텃밭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시장·군수등과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빈집 소유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로 본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) (생략)	제46조(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빈집 소유자(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를 말한다)가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은 그 부속토지의 지목이 대(垔)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목을 대(垔)로 변경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③ 빈집 소유자(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)가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로서 그 부속토지를 주차장, 텃밭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시장·군수 등과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빈

<u>집 소유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로 본다.</u>
--